

이사장경영성과계약서

2013. 3.



이사장경영성과계약서

제 1 장 총 칙

제 1 조(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지방공기업법 제58조의 2에 근거하여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 임기 중 달성하여야 할 경영목표, 이사장의 권한과 책임, 성과급을 포함하는 보수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이사장간에 경영성과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사장의 책임경영의 기준을 정하고 공단의 경영효율성과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계약의 체결) ① 구청장과 이사장은 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며, 이 계약서에 각각 날인(또는 서명)함으로써 이 계약이 성립된다.
②이 계약의 당사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의 상대방에게 이 계약의 이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 3 조(계약기간) ① 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2013년 2월 22일부터 임기 만료까지로 한다.
②이 계약은 전항의 계약기간중이라 하더라도 본인의 사임 또는 해임, 기타의 사유로 중도에 퇴임하는 경우에는 퇴임과 동시에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

제 4 조(이사장의 권한과 책임) ① 이사장은 공단의 최고경영자로서 공단을 대표하며 제반 경영활동을 통할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②이사장의 직무 수행과 관련된 권한은 지방공기업법과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구조례”라 한다), 공단의 정관과 제규정 및 이 계약서가 정한 바에 따른다.
- ③이사장은 지방공기업법, 설립 및 운영조례, 공단의 정관과 제규정 및 이 계약서에서 정한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의무를 지며, 제7조에서 정한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 5 조(청렴 · 공정한 직무수행) ① 이사장은 재임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금품수수,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② 이사장은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재임기간 중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법 · 부당하거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이사장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저촉된 행위를 한 경우, 송파구청장은 파면, 해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 6 조(임기중 겸직제한등) ① 이사장은 공단에 재임하는 동안 그 직무 이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사장은 퇴임 후 2년 동안 공단과 경쟁관계 또는 중요한 거래관계에 있는 기관(회사)의 직위에 취임하거나 대가를 받고 그 회사를 위하여 활동할 수 없다. 다만, 이사회에 동의를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이사장은 재임 중에는 물론 퇴임 후에도 이사장으로 재임하면서 알게 되었거나 지득한 공단의 기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기밀을 이용하여 공단의 이익에 상반되는 행위를 하여서도 아니 된다.

④ 이사장은 제2항과 제3항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상법 등 관련 법률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제 2 장 경영목표 및 경영성과 평가

제 7 조(경영목표) ①이사가 임기중 달성하여야 할 경영목표는 별표 2와 같다.
②이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이와 같다.

제 8 조(경영실적 보고) 이사는 매년 경영목표에 대한 당해연도 경영목표 이행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년도 4월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9 조(이사장경영목표 이행실적평가) ①이사장의 경영목표 이행실적에 대한 평가(이하 “이사장평가”라 한다)는 구청장이 행한다.
②제1항의 목표이행실적을 평가하기 위한 목표별 가중치와 평가기준, 목표치와 기준치는 별표 3과 같다.
③목표이행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 인센티브의 기준이 되는 평가 등급을 부여하며, 그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 10 조(경영성과에 따른 성과 인센티브) ①이사장의 경영성과(“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서울시장의 실시하는 경영평가와 제9조에서 규정하는 이사장평가”를 말하며, 이하 같다)는 성과급 및 기본연봉에 반영한다.
②구청장은 이사장의 경영성과에 따라 임기만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 연임시키거나 임기중이라도 해임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별표 5 및 별표 6과 같다.
③평가대상 사업년도중에 2인 이상의 이사장이 재임한 경우의 성과 인센티브는 개인 공헌도에 따라 배분하며, 그 기준은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연봉조정과 연임 또는 해임조치는 재임중인 이사장에만 적용한다.

제 3 장 보수 및 복리후생

제 11 조(보수체계) 이사장의 보수는 기본연봉, 성과급 및 퇴직금으로 하며 그 지급시기와 방법은 이 계약서에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공단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 12 조(기본연봉) ①이사장의 임기중 기본연봉액은 별표 1과 같으며 매월 12분의 1씩 공단의 급여지급일에 지급한다.

②전항의 기본연봉은 연봉계약서에 의한다.

③이사장의 기본연봉은 경영성과에 따라 인상 또는 삭감하며, 그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④제3항에 의하여 인상 또는 삭감된 기본연봉은 연봉조정이 확정된 년도부터의 기본연봉으로 적용하고, 그해 12월 보수지급일에 정산한다.

⑤이사장이 임기 중 해임되거나 임기만료 또는 사망 기타의 사유로 중도에 퇴임하는 경우에 해임 또는 퇴임 일이 속하는 월의 기본급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 13 조(성과급) ①이사장의 성과급은 구청장이 정하는 지급률에 연봉월액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이사장의 경영성과에 따라 달리 지급하며, 그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②성과급 지급시기는 경영평가결과 확정통보일 기준 3월이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이사장이 사업연도 중에 퇴임하는 경우에는 퇴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성과급은 당해 사업연도의 경영성과에 대한 평가가 완료된 후 확정된 성과급을 퇴임일까지 근무기간에 대하여 월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56조의2 제1항의 규정 및 본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임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년도 및 해임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성과급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 14 조(보수 지급후의 조정) ① 이사장에게 성과급 및 연봉등 보수를 지급한 이후에 조세환급, 오류의 발견,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보수 지급 금액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다음연도의 보수 지급시에 이를 가감 조정한다.

②이사장이 중도에 퇴임하여 전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를 다음 연도의 보수에서 가감 지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가산 지급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단이 퇴임한 이사장에게 추가로 지급하고, 감산 지급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퇴임한 이사장이 그 금액을 공단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 15 조(퇴직금) ① 퇴직금은 이사장이 1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며, 지급금액은 재임기간 1년에 대하여 1개월분의 월평균 보수로 한다.

②퇴직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월평균 보수는 이사장이 재임시 지급 받은 기본연봉, 가족수당, 직책급업무추진비, 명절휴가비를 합한 금액을 재임한 개월수로 나누어 산출한다.

③제1항의 재임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1년 미만에 대해서는 일할 계산한다.

④기타 퇴직금과 관련하여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단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제 16 조(복리후생 등) ①공단은 이사장이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제반 편의를 제공한다.

②이사장의 휴가, 의료, 보건관리, 기타 복리후생적 혜택은 공단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 4 장 기 타

제 17 조(경영목표 및 계약내용의 변경) ①이 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경영목표 및 계약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당사자의 요청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정부정책, 송파구정책,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경영목표를 변경해야 될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명확하게 예상되는 경우
2. 보수 등 계약내용에 관한 중대한 오류나 결함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여건변화로 변경이 필요하다고 상호 인정하는 경우
3. 경영성과계약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도·조언, 권고한 경우

② 제1항에 의한 경영목표 및 계약내용의 변경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 18 조(계약의 해석) 이 계약의 용어 및 계약내용에 관한 해석과 관련하여 송파구청장과 이사장 상호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구청장의 해석에 의한다.

제 19 조(권리의 귀속) 이사장이 재임기간 중 업무와 관련하여 개발한 발명품, 특허권, 등록상표, 아이디어 및 기타의 모든 지적재산권은 공단에 귀속되며, 이사장은 이와 관련된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못한다.

제 20 조(세금) 이사장에게 지급하는 모든 보수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징수하여야 하는 제반 세금과 공과금은 이사장에게 지급되는 모든 보수에서 원천징수 한다.

제 21 조(계약서의 보관) 이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 계약당사자가 1부씩 보관한다.

부 칙

제 1 조(계약기간) ① 제3조제1항의 계약기간의 기산일은 당초 임명일로 부터 정한 것이며, 계약 체결일과는 무관하다.

제 2 조(이사장평가 실시시기) 제9조에 의한 이사장평가는 본 계약서가 체결된 2013년도의 경영목표에 대한 이행실적부터 실시한다.

제3 조(성과급 지급기준) ①성과급 기준으로 구청장이 실시하는 이사장 평가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서울시장의 실시하는 경영평가 결과를 적용할 수 있다.

② 부칙 제3조 제1항에 의거 이사장의 연봉조정 및 성과급을 지급하며 그 세부내용은 별표 7과 별표 8를 적용한다

지방공기업법, 송파구시설관리공단정관에 따라 구청장과 이사장은 위 계약서의 모든 내용을 확인한 후 상호합의에 의하여 이 경영계약을 체결함

2013년 3월 27일

송 파 구 청 장 (인)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채관석 (인)

- 별 표 1. 기본연봉
2. 경영목표
3. 경영목표 평가기준
4. 경영목표 이행실적 평가등급 기준
5. 연임기준
6. 임기중 해임사유
7. 연봉 조정표
8 성과급 지급률

[별표 1 : 기본연봉] : 임용년도 연봉액은 최초 연봉계약에 의거 지급하고,
매년 경영성과에 따라 조정하여 지급한다.

☐ 연 봉 액 : 연봉계약서에 의함

[별표 2 : 경영목표]

경영목표	세부 추진사항
1. 차질 없는 공공서비스 제공	(1) 구청이첩 민원 최소화 (2) 인터넷 홈페이지 민원 최소화 - 민원발생율 감소를 위한 대책 마련
2. 고객만족 증진	(1) 고객만족도 향상노력 강구 (2) 고객평가 결과 개선 노력 강구
3. 지방공기업 정책 및 운영 지침 준수	(1) 공기업정책에 대한 능동적인 이행 준수 (2) 책임경영 및 운영의 건전성 확보
4. 경영수지 개선	(1) 사업계획에 의한 수입목표 설정 (2) 예산서상에 명시된 수입목표 달성 노력 강구 (3) 경영수익 개선 노력 강구
5. 수탁시설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1) 수탁시설의 안전 및 재해예방 강화 (2) 이용고객의 안전성 및 편의성 확보
6. 시설운영의 활성화	(1) 이용고객 증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발굴 (2) 편의시설 확충 등을 통한 이용고객 증대
7. 조직역량 강화를 위한 직원 만족도 제고	(1) 내부직원의 사기양양 활동 강화 (2) 사기양양을 통한 생산성 향상
8. 기 타	(1) 정부포상 수상 및 노사 무분쟁 (2) 경영개선 권고사항 준수 (3) 경영평가 우수기관 인센티브 강화

[별표 3 : 경영목표평가기준]

경영목표	목표치	최하	평가기준	비 고	배 점
1. 차질 없는 공공서비스 제공	5% 이상 감소	2%미만 감소	구청이첩 민원발생 감소율 (연 5% 감소)	공통목표	15
	5% 이상 감소	2%미만 감소	홈페이지 민원발생 감소율 (연 5% 감소)		5
2. 고객만족 증진	2% 이상	-1% 미만	고객평가(설문조사) 점수 향상(연 2%향상)	공통목표	10
3. 지방공기업 정책 및 운영 지침 준수	평가목표 6건 중 6건 준수	평가목표 6건 중 3건미만준수	정부정책 및 운영지침의 100% 준수	자율목표	10
4. 경영수지 개선	110% 이상	90% 미만	수입 목표 대비 (110% 달성)	자율목표	20
	110% 이상	90% 미만	경영수익 전년대비 (110% 달성)		
5. 수탁시설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0건	3건 이하	안전 및 재난사고 발생건 (“0” 화)	자율목표	5
	0건	3건 이하	수해로 인한 피해건 (“0” 화)	자율목표	5
6. 시설운영의 활성화	2% 이상	0.5% 미만	시설이용자수의 증가율 (연 2%이상)	자율목표	15
7. 조직역량 강화 위한 직원만족도 제고	3% 이상	1% 미만	내부고객 만족도 점수 향상 (연 3% 향상)	자율목표	5
8. 기 타	수상 2건 노사무분쟁	-	정부포상 수상 및 노사 무분쟁	자율목표	10
	불이행 0건	불이행 4건 이상	서울시, 구 정기감사, 공단 총괄관리 부서의 경영개선 권고사항 준수		
	우수공단	2위	경영평가 결과 우수기관 선정시 가점 부여(평가군 2위 이상) ○ 해당년도 경영평가 결과		2
계	-	-	-	-	102

※ 붙임 1. 「경영성과 계약 목표 세부내용」 참조

[별표 4 : 경영목표 이행실적 평가등급(이사장평가) 기준]

점 수	95점 이상	90점 이상	75점 이상	60점 이상	60점 미만
등 급	S	A	B	C	F

[별표 5 : 연임기준]

1. 이사장평가와 경영평가 결과 모두 2년 연속 최상위 평가등급을 받은 경우
2. 2년 이상 최하위 경영평가 등급을 받고 있는 공단을 최상위 등급으로 상향시킨 경우
3. 경영평가 결과 매년 평가등급이 상향된 경우로서, 임기 중 최종 경영평가에서 최상위 평가등급을 받은 경우

※ 최상위 등급 : 평가대상 중 상위 10% 이내, 최하위 등급 : 평가대상 중 하위 10% 이내

[별표 6 : 임기중 해임사유]

1. 이사장평가결과와 경영평가결과 모두 최하위 평가등급을 받은 경우
2. 이사장평가결과 2년연속 최하위 평가등급이거나 경영평가결과 2년연속 최하위 평가등급을 받은 경우
3. 특별한 사유없이 현저히 악화된 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만, 이사장의 귀책사유가 명백히 없는 경우는 제외

※ 최하위 등급 : 평가대상 중 하위 10% 이내

[별표 7 : 연봉 조정표]¹⁾

(1) 사업년도의 경영성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상 또는 삭감한다(단위 %)

단, 서울시 경영평가결과에 따라 가감할 수 있음

1) 표내의 조정율은 정부기준내에서 구청장과 이사장의 합의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정함

구분	이사장평가(경영목표 이행실적평가) 결과				
	S	A	B	C	F
조정율(%)	5~10	2~5	-2~2	-5~-2	-10~-5

(2) 임기중의 경영성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1. 이사장평가·경영평가 결과 모두 2년 연속 최상위 평가등급을 받은 경우 10% 인상한다.
2. 이사장평가·경영평가 결과 모두 2년 연속 최하위 평가등급을 받은 경우 10% 삭감한다.

※ 최상위 등급 : 평가대상 중 상위 10% 이내, 최하위 등급 : 평가대상 중 하위 10% 이내

[별표 8 : 성과급 지급률]

(1) 등급별 지급률은 450% ~ 0% 범위내에서 차등지급률을 정하여 지급 하되, 경영평가결과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2) 임기중의 경영성과가 이사장평가·경영평가 결과 모두 2년 연속 최상위 평가 등급을 받은 경우 또는 1개 이상이 2년 연속 최상위 평가등급을 받은 경우, 지방공기업 경영대상(국무총리상 이상)을 수상한 경우 등은 별도 고려하여 지급한다.

※ 최상위 등급 : 평가대상 중 상위 10% 이내, 최하위 등급 : 평가대상 중 하위 10% 이내

경 영 목 표

□ 목표총괄(100점 만점, **가점(2점) 별도**)

구 분	달 성 지 표	달성 목표	비중	비 고
① 차질없는 공공서비스 제공	1-1. 구청이첩 민원발생 감소율 ○목표 : 전년도 대비 5% 감소	연 5% 감소	15% (15점)	
	1-2. 인터넷 민원발생 감소율 ○목표 : 전년도 대비 5% 감소	연 5% 감소	5% (5점)	
② 고객만족 증진	2 고객만족도 평가점수 향상 ○목표: 전년도 대비 외부고객만족도 연 2% 향상	연 2% 향상	10% (10점)	
③ 지방공기업 정책 및 운영 지침 준수	3. 책임경영 및 운영의 건전성 확보 ○인건비 인상율 가이드라인 준수 ○노조전임자운영의 적정성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이행여부 ○성과급제 운영의 적정성 ○업무추진비 집행의 적정성 ○통합경영공시 운용의 적정성	정책 및 운영 지침 100% 준수	10% (10점)	
④ 경영수지 개선	4-1 당년도 예산서상 수입목표 대비 달성 ○공단 예산서상에 명시된 당년도 수입목표 대비 달성도 (110%)	110% 달성	10% (10점)	
	4-2 경영수익 개선 ○전년 경영수익 대비 달성도 (110%)	110% 달성	10% (10점)	

구 분	달 성 지 표	달성 목표	비중	비 고
[5] 수탁시설안전 관리 및 재해예방	5-1. 안전 및 재난발생 사전 예방 ○'10년 안전 및 재난사고 예방교육(연2회 실시) ○사업장별 안전 및 재난사고 발생건 "0"화	발생건 " 0 건"	5% (5점)	
	5-2. 수해예방활동 실적(탄천차고지) ○침수발생 후 피해 발생건 "0"화	피해건 " 0 건 "	5% (5점)	
[6] 시설운영의 활성화	6. 이용자수 증가율(전년도 대비) ○ 위탁 시설물의 연간 이용고객수 증가	연 2% 증 가	15% (15점)	
[7] 조직역량 강화를 위한 직원만족도 제 고	7. 직원만족도 설문조사 점수 향상(전년 대비) ○전년도 대비 3% 향상	연 3% 향 상	5% (5점)	
[8] 기 타	8-1. 정부포상 수상 및 노사 무분쟁 8-2. 서울시, 구 정기감사, 공단 총괄관리 부서의 경영개선 권고사항 준수	노사무분쟁 및개선권고 사항 100% 준수	10% (10 점)	
	8-3. 경영평가 결과 우수기관 선정 ○ 해당 년도 경영평가 결과 (전체 2위 이상에 한함)	우수공단 (1,2위)	가점 (2점)	(신설)

□ 최종 평가등급 판정기준

구 분	S 등급	A 등급	B 등급	C 등급	F 등급	비고
평점	95점 이상	90점 이상	75점 이상	60점 이상	60점 미만	

※ 총 100점 만점기준으로 평가(**가점 2점 별도**)

Ⅲ. 경영목표별 세부평가방법

① 차질 없는 공공서비스 제공(20%)

- ◆ 구청이첩민원,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민원발생률 최소화로 공단 신뢰성 제고

[목표 1-1] - 15%

□ 목표개요

- 지 표 명 : 구청이첩 민원발생율 감소
- 연도목표 : 구청이첩 민원 5% 감소
- 목표내용

구 분	내 용	비고
송파구청으로부터 이첩된 민원 발생율	▪ 송파구청으로부터 이첩된 민원발생 감소율 (전년도 대비 민원발생율 5% 감소)	

□ 평가방법

- 평가기준 : 민원발생 감소율 대비 목표 달성도
- 평가산식 : 평가등급 기준 목표율 달성 값 적용
- 평가등급

구 분	S등급 (15점)	A등급 (14점)	B등급 (13점)	C등급 (12점)	F등급 (11점)	비고
목표율 (감소율)	5%이상 ↓	4%이상 ↓	3%이상 ↓	2%이상 ↓	2% 미만 ↓	

[목표 1-2] - 5%

□ 목표개요

- 지 표 명 : 인터넷 홈페이지 민원발생율 감소
- 연도목표 :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 민원 5% 감소
- 목표내용

구 분	내 용	비고
인터넷 홈페이지 민원 발생율	▪ 인터넷상으로 제기된 민원 중에서 불만 및 불친절 민원발생 감소율(단순질의 사항 제외) (전년도 대비 민원발생율 5% 감소 - 홈페이지 기준)	

※ 단, 경영여건변화(신규사업추진 등)로 인한 민원발생건은 제외

□ 평가방법

- 평가기준 : 민원발생 감소율 대비 목표 달성도
- 평가산식 : 평가등급 기준 목표율 달성 값 적용
- 평가등급

구 분	S등급 (5점)	A등급 (4점)	B등급 (3점)	C등급 (2점)	F등급 (1점)	비고
목표율 (감소율)	5%이상 ↓	4%이상 ↓	3%이상 ↓	2%이상 ↓	2% 미만 ↓	

2 고객만족 증진(10%)

- ◇ 지역구민의 만족도 증진으로 공기업 본연의 설립목적 달성
- ◇ 고객중심의 경영관리로 구민이 신뢰하는 지방공기업상 정립

□ 목표개요

- 지표명 : 외부고객(이용고객) 만족도 향상
- 조사방법 : 전문업체 용역
- 연도목표 : 전년 대비 2% 향상

□ 평가방법

- 평가기준 : 고객만족도 목표달성률(용역기관 측정결과 반영)
- 평가산식 : 평가등급 기준 목표율 달성 값 적용
- 평가항목 : 직무만족도, 미래성장 가능성 등
- 평가등급

구 분	S등급 (10점)	A등급 (9점)	B등급 (8점)	C등급 (7점)	F등급 (6점)	비 고
목표율 (향상율)	2%이상	1%이상	0%	-1%이상	-1% 미만	

3 지방공기업 정책 및 운영지침 준수(10%)

- ◇ 정부정책 준수로 이사장 책임경영 및 운영의 건전성 확보
- ◇ 지방공기업 정책 및 지침 이행을 통한 경영개선효과 제고

□ 목표개요

- 지표명 : 지방공기업 정책 준수도
- 연도목표 : 정책 및 운영지침 100% 준수

구 분	평 가 내 용	비고
1. 인건비 인상률 준수	▪ 평가연도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예산지침 준수)	
2. 노조전임자운영 준수	▪ 노조전임자 운영지침 준수	
3. 감사 지적사항 이행	▪ 감사원감사 지적사항 이행여부	
4. 성과급제 운영지침 준수	▪ 성과급 지급 기준 등 준수 여부	
5. 업무추진비 지침 준수	▪ 정부기준에 적합한 업무추진비 운영	
6. 통합경영공시 지침 준수	▪ 행정안전부 클린아이 시스템에 경영공시 여부	

※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경영평가항목 적용

□ 평가방법

- 평가기준 : 평가항목별 이행 여부 판단
- 평가등급

구 분	S등급 (10점)	A등급 (9점)	B등급 (8점)	C등급 (7점)	F등급 (6점)	비고
목표 준수 건수	6건 준수	5건 준수	4건 준수	3건 준수	3건 미만	

4 경영수지 개선(20%)

- ◇ 예산 및 사업계획에 의한 효율적인 경영관리 추진
- ◇ 경영수익 목표 달성 및 수익 개선을 통한 구(區)재정 증대

[목표 4-1] - 10%

□ 목표개요

- 지표명 : 위탁사업별 수입목표 달성
- 지표적용 : 공단 수입목표가 설정된 모든 사업장
- 연도목표 : 수입목표 110% 달성

□ 평가방법

- 평가기준 : 공단 예산서상에 명시된 수입목표 대비 달성도
- 평가산식 : $[\text{수입액} \div \text{수입목표액}] \times 100$
- 평가등급

구 분	S등급 (10점)	A등급 (9점)	B등급 (8점)	C등급 (7점)	F등급 (6점)	비고
목표달성률	110%이상	105%이상	100%이상	90%이상	90%미만	

[목표 4-2] - 10%

□ 목표개요

- 지표명 : 경영수익 개선
- 지표적용 : 공단 모든 사업장
- 연도목표 : 전년도 순수익 대비 **110%** 달성

□ 평가방법

- 평가기준 : 전년 대비 경영수익(순수익) 개선도
- 평가산식 : (당해 평가연도 순수익/ 전년도 순수익)×100
- 평가등급

구 분	S등급 (10점)	A등급 (9점)	B등급 (8점)	C등급 (7점)	F등급 (6점)	비고
목표달성률	110%이상	105%이상	100%이상	90%이상	90% 미만	

※ 단, 구 시책에 따른 수입액 및 지출액 변동분 반영하고,

- ①전년도 순수익이 적자이고 당해연도 흑자로 전환된 경우
A등급을 부여하되 10억이상 흑자인 경우 S등급을 부여
- ②전년도 순수익이 흑자이고 당해연도 적자로 전환 된 경우
C등급을 부여하되 10억이상 적자인 경우 F등급 부여

5 수탁시설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10%)

- ◇ 구청으로부터 수탁받아 운영하는 시설물의 안전 및 재난관리활동 강화
- ◇ 공단 시설을 이용하는 고객의 안전성 보장 및 편의 제공

□ 목표 개요

- 지 표 명 : 수탁시설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 연도목표 : 안전 및 재난사고 발생 및 피해건 “0”화

구 분	평 가 내 용	비고
1. 시설물 안전관리	▪ 공단 시설물 안전점검 활동 (연2회) ▪ 공단 시설물 안전 및 재난사고 “0” 달성	
2. 수해예방활동 강화	▪ 탄천주차장 수해예방활동을 통한 피해율 “0”달성	

□ 평가 방법

- 평가기준 : 각 위탁사업장별 안전 및 재난사고 발생 건수
 - 평가적용 사업장 : 주차장, 차고지, 견인보관소, 여성문화회관, 체육문화회관, 기타 문화체육시설 등
 - 안전사고 : 이용고객 (전치 4주이상)
 - 재난사고 : 화재, 풍수해 등(공단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피해)
- 평가산식 : 평가등급 기준 사고발생건 및 피해건 적용
 - 안전 및 재해발생건, 수해 피해건
- 평가등급

구 분	S등급 (5점)	A등급 (4점)	B등급 (3점)	C등급 (2점)	F등급 (1점)	비고
안전 및 재해 발생건		0건 ↓	1건 ↓	2건 ↓	3건 이하	
탄천차고지 수해발생 피해건		0건 ↓	1건 ↓	2건 ↓	3건 이하	

※ 안전재난사고 발생건이 “0”이고 안전점검 예방활동(연2회)을 실시 시 'S등급' 점수 부여

6 시설운영의 활성화(15%)

- ◇ 여성문화회관, 체육문화회관 등 시설운영 활성화

◇ 시설물 이용고객 확대를 통한 수입증대로 경영효율성 제고

□ 목표개요

- 지 표 명 : 시설운영 활성화를 통한 수입증대

○ 연도목표 : 시설물 이용고객수 확대(전년대비 2%)

□ 평가방법

- 평가기준 : 위탁 사업장별 시설 이용고객 증가율

- 시설이용고객 산정의 기준

여성문화 회 관	체 육문화 회 관	생 활문화 대 학	배드민턴 체 육관	비 고
연간 강좌이용 고객수	연간 강좌이용 고객수	연간 강좌이용 고객수	연간 이용 고객수	2% ↑

- 연간 시설이용객 산정 : 시설이용고객 산정 기준에 의해 합산된 값

※ 시설이용고객 증가율 : $\frac{\text{당 년 도 시 설 이 용 객}}{\text{전 년 도 시 설 이 용 객}} \times 100$

- 평가산식 : 평가등급 기준별 시설이용고객 증가율

○ 평가등급

구 분	S등급 (15점)	A등급 (14점)	B등급 (13점)	C등급 (12점)	F등급 (11점)	비고
시설이용고객 증가율	2%이상	1.5%이상	1%이상	0.5%이상	0.5% 미만	

7 조직역량 강화를 위한 직원만족도 제고(5%)

- ◇ 내부고객인 직원의 만족도 향상을 통한 조직 충성도 강화
- ◇ 공단 직원의 사기양양과 애사심 고취로 생산성 향상

□ 목표개요

- 지표명 : 내부고객 만족도 향상
- 조사방법 : 전문업체 용역 또는 공단 자체조사
- 연도목표 : 전년대비 평점기준 3% 향상

□ 평가방법

- 평가기준 : 직원만족도 설문조사 점수 개선율
- 평가대상 : 일반직, 기능직, 업무직 직원
- 평가산식 : 평가등급기준별 목표달성값
- 평가등급

구 분	S등급 (5점)	A등급 (4점)	B등급 (3점)	C등급 (2점)	F등급 (1점)	비 고
목표율 (향상율)	3%이상	2.8%이상	2.5%이상	1%이상	1%미만	

8 기 타 (10%) - 가점 신설

- ◇ 정부 포상 및 노사 무분쟁으로 공단 위상 제고
- ◇ 경영개선 권고사항 이행을 통한 공단 경영 효율성 제고

□ 목표개요

- 지 표 명 : 공단 위상 제고 개선 권고사항 이행
- 연도목표 : 노사 무분쟁 및 개선 권고사항 100% 준수

□ 평가방법

○ 평가기준

- 정부포상 수상시, 경영관리 품질인증
 - ※ 정부포상지침에 근거하고, 공신력 있는 대외기관에서 주관하는 품질인증만 인정
- 노사 무분쟁
- 서울시, 구 정기감사, 공단 총괄관리부서의 경영개선 권고사항 준수
- **경영평가 결과 우수공단(평가군내 2위 이상) 선정 여부(가점)**

○ 평가등급

구 분	S등급 (5점)	A등급 (4점)	B등급 (3점)	C등급 (2점)	F등급 (1점)	비고
정부포상 · 품질인증	2건	1건	0건	0건	0건	각 2.5점 배점
노사 분쟁	0회	0회	0회	1회 이상	2회 이상	
서울시, 구 정기감사, 공단 총괄관리부서의 경영개선권고사항 불이행	0건	1건	2건	3건	4건 이상	
경영평가 결과 우수공단(2위 이상) 선정	우수공단(2위 이상) 선정시 2점 가점					